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0-62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0년 5월 22일(금)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6일(화)

## 2. 제출사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의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폐지

## 4.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56조

##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 2020. 4. 16. ~ 5. 6.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없음

3)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5. 19.)

##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

○ 이는 재무행정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면,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반영할 때에는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증 한도액을 감안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업무 중요도에 따라 한도액의 상한을 폭 넓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참고자료: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